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강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19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박강산 의원(1명)

찬 성 자: 김 경, 김성준, 김영철,
박수빈, 박승진, 박철성,
서준오, 송도호, 이상훈,
이소라, 이영실, 이용균,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최재란, 한 신 의원(17
명)

1.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의 양적 팽창과 질적 도약을 위해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세대와 배경을 가진 주민의 주민자치회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제1항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지원 범위)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지원 범위를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하고자 제4조(지원 범위)제1항제4호를 변경 신설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¹⁾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서울시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4년도 기준 1,153,346천원의 예산을 기편성²⁾하였음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주민자치회는 각 구청별로 자치구 조례에 따라 운영하기에 본 조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별도의 서울시 재정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2024년도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 1,153,346천원

사업목적

- 주민자치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다양성 강화
- 주민자치 교육 및 성과공유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내용

-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42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 사업기간 : 2024. 1~12월
 - 사업내용
 - 1. 지역 특화사업비 및 자치회관 사업비 등 지원
 - 2.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주민자치회 홍보 콘텐츠 제작
 - 4.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개최 등
-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 사업대상 : 커뮤니티 공간 8개소
 - 사업내용 : 커뮤니티 운영 공간 시설 안전관리 등